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7년 4월 5일

제07-17호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대량살상무기) 해체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정형곤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 (hgieong@kiep.go.kr, Tel: 3460-1127)

나승권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위원 (skna@kiep.go.kr, Tel: 3460-1130)

박철형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주요 내용

- ▣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해체의 주요 사례로서 북핵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여 폐기하는 등 핵무기 폐기과정이 신뢰성 있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됨.
 - 리비아는 자체 노선전환에 따라 先폐기 後조치 방식으로 폐기가 이루어졌으나, 미국과 리비아의 협상 과정과 내용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향후 제재 해제 및 외교정상화 등의 시점에 대한 간접적인 참고사례가 될 것임.
- ▣ 북한의 경우는 핵 폐기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에 비해 더 많은 경제·외교·안보적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평가됨.
- ▣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북핵 합의 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조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더라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정상화 조치는 북핵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 보면 핵 폐기 이행과정에서 서로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및 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따라서 북한은 신뢰 구축을 위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고, 미국 역시 북한이 신뢰 구축의 상징으로 내걸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문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핵 폐기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은 외부의 지원과 경제협력의 효과가 단기적 효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1. 논의 배경

- 최근 2. 13 합의를 통해 북핵문제는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럼에도 핵 폐기의 범위, 수준, 방법 및 절차 등 관련 조치사항에 대한 합의와 이행단계 확정 등의 문제들이 남아있으며, 이로 인해 북핵 해결이 다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음.
- 북핵문제의 해결과, 나아가 한반도내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가능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리비아 등 과거의 유사 핵 폐기 사례를 북한의 경우와 비교·분석해보는 것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전개될 상황에 대한 예측 및 대응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 각국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제재 조치 사례 비교

가. 핵 폐기 사례와 북한과의 비교

- 핵 폐기와 관련한 이전 사례는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등이 있음.
- 구소련으로부터 핵무기를 물려받은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의 대가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받는 내용의 ‘비망록’에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공동으로 서명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93년 6개의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해체하고, 핵물질의 수출입을 통제하는 쟁거위원회¹⁾에 가입하였고, 핵기술을 통제하는 핵공급그룹(Nuclear Supply Groups)과 1995년에 협정을 체결함.

1) 핵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로서, 1970년 NPT가 발효된 후 1971년 NPT 제3조 2항의 시행을 위해 ‘원자력수출국위원회(Nuclear Exporters’ Committee)’가 구성되어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1974년 원자력 수출통제의 기본 규범에 합의함으로써 최초로 실질적인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체제가 마련됨.

- 리비아의 경우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포기를 대가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에 합의함.
-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조건으로 경제제재의 완화 및 지원을 받고 안전보장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유형상 북한의 사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단 우크라이나의 폐기 및 조치의 동시 진행 사례는 북한의 기본입장인 동결 대 보상 조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북한은 보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 반면 리비아의 경우는 대내외의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환경하에 있었으나, 자체 노선전환에 따라 先폐기 後조치 방식으로 폐기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보임.

나. 미국과 UN의 경제제재 조치

- 우크라이나가 1991년 미국과 구소련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전술핵무기를 러시아에 이관함으로써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지 않은 반면,
- 북한과 리비아는 미국에 의한 주요 경제제재 대상국으로서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음.

〈리비아〉

- 리비아는 미국과 UN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 지원 혐의로 강력한 경제제재²⁾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재정부족과 경제침체 등 장기간의 마이너스 성장과 경제적 불안을 경험해왔음.
- 미국은 테러 지원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혐의로 리비아에 대하여 상품교역은 물론 재정 및 금융거래의 중단, 해외자산 동결, 석유부문 투자진출 제한 등 포괄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하였음(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
- 특히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³⁾ 발효를 계기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정점에 달하였는데,

2) UN의 대리비아 경제제재는 리비아의 테러활동 지원을 위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테러 지원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리비아가 테러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UN의 경제제재가 단행된 것임.

이 법은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석유산업 외에는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리비아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침.

- UN은 리비아의 항공기 폭발 테러(일명 로커비 사건⁴⁾ 및 UTA 사건⁵⁾에 대한 대응으로 2단계에 걸친 경제제재 조치를 단행하였음.
- 1992년에 실행된 1단계 조치는 항공운항 금지 및 항공부품의 수출입 금지, 무기 판매 및 수출입 금지 등이 주요 골자로 다소 제한적 범위에 그침.
- 2단계 조치는 1993년에 단행되었으며, 리비아정부 및 민간기업의 해외자산 동결, 석유장비 금수조치 등이 추가되어 실질적으로 리비아경제를 고립시킴은 물론 경제에 치명타를 가하였음.
- 경제제재의 영향은 리비아정부의 긴축재정과 경제침체로 이어져 장기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했으며, 30%가 넘는 실업률과 살인적 물가상승, 임금 동결, 보조금 삭감 등으로 국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됨.
- 세계은행은 UN의 경제제재가 잠정 중단되는 1999년까지 경제제재로 인한 리비아의 경제적 손실액이 약 18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당해 연도 리비아 GDP의 59%에 해당하는 금액임.⁶⁾

〈북한〉

- 북한의 경우는 1950년 이래로 미국의 「적성국교역법」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제재하에 있었으며, 핵실험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가 더욱 강화됨.
- 미국은 적성국교역법(The 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에 따라 포괄적 경제봉쇄 형태로 대북제재를 시행했으며, 이후에도 수출관리법 및 국제무기거래규정 등 국내외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제재가 시행됨.
- 적성국교역법은 미국 재무부의 승인 없이는 수출입 및 금융거래, 투자행위 등을 제한하는 법규로서 미국내 해당국의 자산까지 동결되는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제한함.

3) 「이란·리비아 제재법」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이란과 리비아에 대한 투자제한 조치로서, 이란과 리비아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에 일정액(4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국적을 불문하고 미국과의 경제교류상 불이익을 가하는 조치임.

4) 1988년 12월, 美국적 팬암(Pan Am)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하여 270명이 사망한 사건. 희생자의 과반수가 미국인 유학생들이었으며, 미국과 영국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2명의 리비아인을 기소하였음.

5) 1989년 9월, 프랑스 UTA항공기가 북서아프리카 니제르 상공에서 폭발하여 프랑스인 54명을 포함한 170명이 사망한 사건. 프랑스는 이 사건의 용의자로 2명의 리비아인을 기소하였음.

6) 반면 리비아측은 경제제재로 인한 손실액이 330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함(IEE).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는 적성국교역법과 같이 공산권 국가에 대한 일반적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통상법 제4장을 적용하여 최혜국에서 제외시키는 특별규제 조치를 포함한 전반적 제재임.
- 1994년 타결된 「북·미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의 무역, 투자, 통신, 금융거래에 관한 대북한 경제제재가 2단계에 걸쳐 일부 완화됨.
- 1995년 1월 20일 국내법 개정이나 의회동의 없이 행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초보적인 제1단계 완화조치가 시행됨.
- 2000년 6월 19일 미국은 대북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효하여 광범위한 경제제재의 해제가 이루어졌으며, 민간부문의 교역 및 투자에 대한 제재는 거의 해제됨.
- 그러나 2003년 이후,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등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다시 강화됨.
- 2006년 10월 15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군사조치의 가능성은 배제하는 대신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함.
- 제재의 내용은 핵, 미사일에 관련된 북한의 해외자산을 동결하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 상품, 장비, 기술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이 사용할 사치품의 이전 및 수출을 금지하는 것임.

3. 대량살상무기 폐기와 경제적 효과

가.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배경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구소련이 1991년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I)에 따라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와 함께 전술핵무기를 러시아로 이관하고 비핵국가로서 NPT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함.

〈리비아〉

- 리비아 가다피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배경에는 핵무기 개발의 부진과 정권 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상황들이 자리 잡고 있음.

- 리비아는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인해 핵무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장비를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핵무기 개발 노력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경제난이 가다피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높이고 이를 이용한 저항세력의 결집이 강화되어 정권에 대한 내부적 위협요인으로 작용함.⁷⁾
- 대외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후세인 체포 등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가다피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행동 결행에 큰 위협을 느끼고, 강경 반미노선을 포기함.
- 실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2003년 3월경에 리비아는 영국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의사를 타진하며 미국과의 비밀협상에 돌입하였으며, 동년 12월 후세인이 체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를 선언함.

〈북한〉

- 북한은 핵개발 단계가 상대적으로 앞서있다는 측면과 상대적으로 대내적인 위협요인이 적다는 점 등에서 정권 유지에 대한 위협은 리비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
- 북한의 경우 핵실험 성공 발표를 통해 내부 체제 결집력을 강화하여 체제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미국과 UN의 경제제재 조치는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나, 중국이라는 배후국가의 존재는 대북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리비아는 정권 보장 및 경제제재의 해제에 주안점을 둔 것에 비해 북한의 경우는 핵 폐기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최대한의 경제적·외교적 실리를 획득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목적인 것으로 평가됨.
- 이와 같이 동결 대 보상 조치라는 북한의 노선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같은 동시조치에 따른 핵 폐기 과정과 유사한 절차적 특성을 가짐.

7) 가다피 정권에 대한 대표적 저항세력은 리비아이슬람투쟁단체(LIFG)로, 1996년 가다피 암살을 시도하였으며 알카에다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따라서 향후 북한의 핵 포기 과정에 있어서는 경제적·외교적·안보적 상응 조치에 대한 선행적 합의라는 전제하에서 경제제재 해제와 핵 폐기 절차가 진행될 것임.

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 협상의 경과

1) 선행과제

〈리비아〉

- 리비아는 미국과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협상에 앞서 미국의 대테러활동에 협력하고 로커비 사건 등 테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상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음.
- 리비아는 팬암기 테러용의자의 신병을 UN에 인도함으로써 1999년 4월 UN의 잠정적 경제 제재 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곧이어 동년 7월에는 영국과의 외교관계도 복원함.⁸⁾
- 또한 가다피는 2001년 9.11사태 발생시 즉각 테러세력을 비난하였으며 이후 테러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대테러활동 협력을 지속함.⁹⁾
- 이후 미·영과의 협의를 통해 2003년 3월 로커비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¹⁰⁾하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¹¹⁾에 합의함으로써 리비아는 테러지원활동에 대한 문제를 종결짓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경제제재 해제를 협상할 수 있는 선행조건을 충족시킴.

〈북한〉

- 북한의 경우 리비아와 같이 대테러 지원국으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과거 핵협상에서의 입장 번복 사례 등으로 인해 실추된 신뢰의 회복이 필요함.
-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및 경제회생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것을 이끌어내되 이후 합의된 폐기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8) 리비아측이 로커비 사건 용의자 신병 인도와 더불어 1984년 영국주재 리비아대사관 총격사건에 대한 사과 및 유가족 보상에 합의함으로써 15년 만에 양국간 외교관계가 복원되었음.

9) 가다피의 대테러활동 협력은 국내 저항세력인 리비아이슬람투쟁단체(LIFG)가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CRS Report for Congress 2006. 6. 13, *Liby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p. 8).

10) 리비아측은 로커비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사건피의자 Meghrahi의 정부고용 책임에 국한하고, 테러에 대한 정부 개입 등 정부의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에 합의함.

11) 피해자 1명당 1천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 협상은 타결되었으며, 지급 조건은 UN 경제제재 해제 시 4백만 달러, 미국 경제제재 해제시 4백만 달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시 2백만 달러 등 경제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와 연계되어 있음.

2) WMD 폐기 과정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구소련의 전략무기감축협정(1991) 규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해체에 합의하였고, 1994년 1월 14일 클린턴-엘친-크라바초크 사이에 3자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핵협상은 실질적으로 마무리됨.
 - 합의 내용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동년 12월 NPT 비준과 START-I 비준서를 기탁함과 동시에 러시아, 영국, 미국이 보장하는 안전보장 각서를 받음.
 - 우크라이나는 START-I 협정에 따라 이후 7년 이내에 러시아로 핵탄두를 이전하고 SS-24의 핵탄두를 조기에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시행함.
 -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HEU(고농축우라늄)를 저농축 핵연료봉으로 보상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확대함.
 - 미국, 러시아, 영국은 공히 우크라이나가 비핵국가로서 NPT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서면으로 합의함.
-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하되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다는 원칙하에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 결의는 없었으며, 미국은 「Nunn-lugar 프로그램」을 입법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포기과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함.

〈리비아〉

- 2003년 12월 19일 리비아는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장거리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와 함께 이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함.
 - 이는 북한이 2.13 합의에서 밝힌 조치사항에 비해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리비아의 WMD 폐기를 통한 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先이행 後보상을 강조해온 미국은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보상을 제공한 것이 특징임.

표 1. 리비아 조치와 북한의 합의사항 비교

	리비아 WMD 프로그램 포기 결정(2003. 12. 19)	2.13 합의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핵무기 및 화학무기 프로그램 폐기 •모든 핵활동을 IAEA에 보고 •사정거리 300km, 적재량 500kg 이상의 탄도미사일 폐기 •NPT 이행을 위해 국제사찰을 허용하고 추가의정서 서명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하고 화학무기금지조약(CWC)에 가입 •이들 활동을 이행하기 위한 즉각적 사찰과 감시를 허용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지침 준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IAEA 요원 초청 •핵프로그램 폐기 목록 협의 •북·미, 북·일 양자대화 개시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등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

-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는 2004년 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폐기 진행에 대한 검증작업 후 비교적 신속한 보상 조치를 취하였음.
-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 1단계 조치(2004년 1월 중)로 리비아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고, 핵무기 설계정보와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주요 장비와 문서를 미국측에 전달함.
-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폐기 2단계 조치로 리비아는 핵무기 개발과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 및 폐기와 함께 대량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를 해체·반출하였음.
 - 2단계 조치는 2004년 2월에서 9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신속하게 처리됨.
 - 추가의정서 서명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핵사찰을 허용하였으며, 화학무기 금지조약(CWC)에 가입, 보유 화학무기의 폐기 및 관련 장비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을 위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의 사찰을 허용함.
 - 또한 원심분리기 부품, MTCR급 미사일 장비, 스커드-C 미사일, 미사일 발사대 등 1,000톤 이상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를 미국으로 이송하였으며, 1980년대 공급된 17kg의 고농축우라늄(HEU)을 러시아로 반송함.
- 이어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완전 폐기에 해당하는 3단계 조치가 진행되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폐기됨.
 - 미 국무부는 2005년 10월 리비아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원료와 설비가 제거되고 관련 활동들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하여 사실상 폐기가 완료된 상황임.

- 현재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 작업이 2007년 4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임.
- 미국은 리비아의 2단계 폐기 조치 완료 및 3단계 이행의 보상으로 양자간 외교관계 복원 및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취하였음.
 - 2006년 5월과 6월, 미국은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¹²⁾하고,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시킴으로써, 1979년 주리비아 대사관 폐쇄 이후 약 25년 만에 양국간 외교관계가 완전 복원됨.
 - 또한 리비아의 평화적 핵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과 IAEA의 지원하에 러시아로부터 저농축우라늄(LEU)을 제공받음.

3) 북핵에 대한 시사점

- 리비아는 WMD 폐기 과정에서 제재 해제 이외에 직접적인 경제적 상응조치를 받지 않았으며, 상당한 폐기단계가 진행된 이후에 제재 해제 및 관계정상화 조치가 실행에 옮겨짐.
- 실질적인 WMD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로 인해 리비아가 받은 상응조치는 정권의 유지 보장과 경제제재의 해제, 양국간 관계정상화 등임.

표 2. 리비아/북한의 핵 포기에 따른 상응조치

	리비아	북한
상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경제제재 해제(대부분의 상거래 허용, 금융거래, 투자허용, ILSA법 적용 해제)(2004. 4) •연락사무소 설치(24년 만에 외교관계회복, 리비아의 WMD 포기 선언 이후 6개월 만임)(2004. 6) •경제제재 공식해제(양국간 항공 운항 및 항공기 수출 허용, 13억 달러 규모의 리비아 자산 동결 해제, 수출입은행 차관금지 해제 (2004. 9) •리비아 주재 연락사무소를 대사관으로 승격(2006. 5) •리비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2006. 6) •러시아, IAEA와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 하에 저농축 우라늄 제공(2006 여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조치 단계 중유 5만 톤 지원 •핵 불능화 단계 중유 95만 톤 지원 •전력 200만kw제공 (경수로 사업 중단을 전제) •인도적 지원(쌀 50만 톤, 비료 35만 톤) •개성공단 개발 등 산업생산 지원

12) 테러지원국 삭제 결정에도 불구하고 리비아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및 장비에 한해 수출통제를 유지.

- 리비아 사례에서 보면 연락사무소 설치(2004. 6)의 경우 핵무기 및 WMD 관련 장비의 미국으로의 이전, IAEA의 포괄적 핵사찰 허용(2004. 1) 등 실질적인 폐기 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이루어짐.
 - 이에 근거해 볼 때 북핵문제의 경우 적어도 경제적 지원 조치는 합의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주어질 수는 있으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외교관계 정상화 조치는 북핵의 폐기가 실질적으로 완료되는 시점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리비아 주재 연락사무소의 대사관 승격은 미 국무성이 공식적으로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이 종료되었다고 발표(2005. 10)한 이후 2006년 5월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완전 정상화 또한 상당히 장기적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음.
-
- 리비아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2004. 1)하고 핵무기 설계 정보 및 관련 장비·문서를 미국으로 이송하는 등 기본적인 핵 폐기 절차를 완료한 후 곧바로 1차 관계개선 조치를 실행하고 단계적으로 제재 해제 시행함.
 - 이와 같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도 폐기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측간의 신뢰 구축 상황에 따라서는 비교적 초기 조치단계에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제재 완화는 가능할 것임.
-
- 특히 리비아의 경우 경제제재 완화 조건으로 화학무기 포기를 제의하고, UN측에 로커비 용의자의 신병을 인도(1999. 4)하는 등 적극적인 노선 전환의 모습을 보여 UN 경제제재 조치의 잠정적인 중단(1999. 4)을 얻어냄.
-
-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면 「협력적 위협감소프로그램(CTR)」과 같은 인센티브 법제화를 통해 보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한 바 있음.
-
- 즉 북핵 협상에 있어서도 서로간의 조치 이행 보장에 대한 신뢰도 구축이 선결될 문제이며 이를 위한 제도적 틀의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임.
-
- 리비아와 우크라이나는 핵 폐기 혹은 포기의 대가로 저농축 우라늄 등 핵에너지의 활용을 위한 지원을 수용함.
-
- 리비아는 1980년대에 공급된 15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원자료 원료를 러시아로 반송하고 (2004. 3), 2006년 러시아, IAEA와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하에 저농축 우라늄을 제공받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또한 러시아로부터 고농축우라늄(HEU)을 저농축의 핵연료봉으로 보상 받은 바 있음.

- 북한의 경우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1) 리비아 현황

-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마이너스성장과 함께 경제적 부침을 겪던 리비아는 경제제재 해제 이후 플러스성장세로 돌아선 데 이어 최근 5% 내외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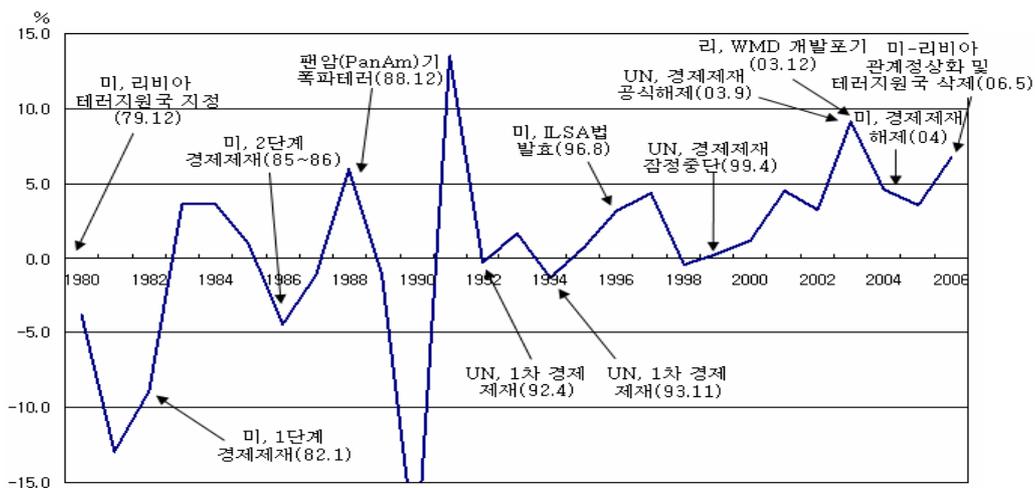
- 미국과 UN의 경제제재로 1980~90년대에 걸쳐 고질적인 고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으나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소비자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

- 구매력을 감안한 1인당 실질 GDP(PPP)가 UN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력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

- 1981년 7,600달러이던 1인당 실질 GDP(PPP)가 미국과 UN의 경제제재와 저유가시기를 맞으면서 1999년에는 4,5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까지 급락하였으나,

- UN의 경제제재가 해제된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5,300달러대로 개선되었음.

그림 1. 대리비아 경제제재 경과과정과 경제성장률 추이(1980~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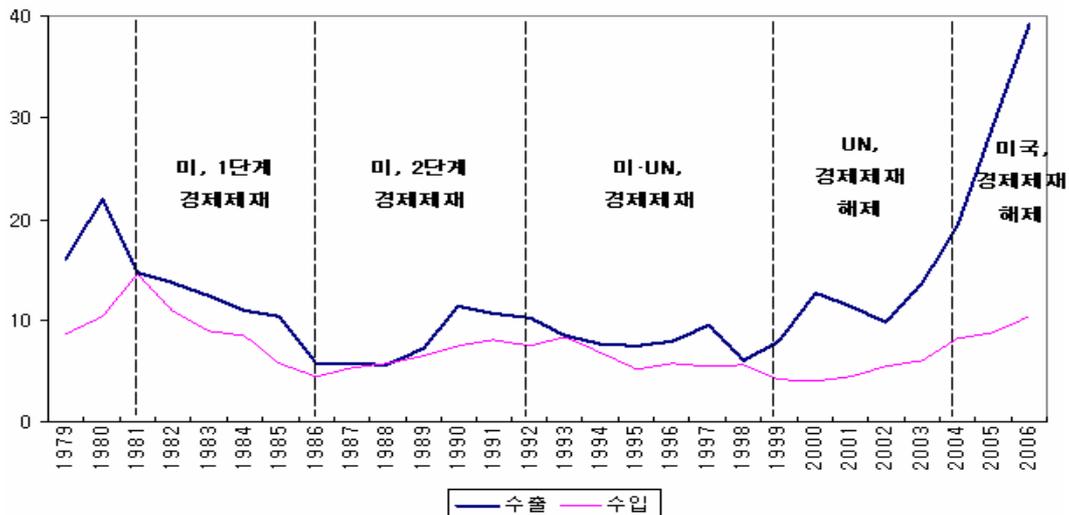


주: 2006년은 추정임.
 자료: Global Insight

- 석유생산량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산유량 증가를 위해 리비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리비아는 현재 170만b/d 수준인 석유생산량을 2008년까지 200만b/d, 2015년까지 300만 b/d로 늘리기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음.
- 대외교역은 리비아의 경제제재 해제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로 UN과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수출이 급증하고 있음.
 -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전 약 70억 달러에 불과하던 리비아의 수출액이 UN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2004년에는 약 2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후 2006년에는 약 390억 달러로 증가하였음.

그림 2. 리비아 교역 추이(1979~2006년)

(단위: 십억 달러)



2) 북한경제에의 효과 전망

- 대체로 유엔의 제재결의안에 따른 중국 등 주요국의 경제제재는 북한에 큰 타격으로 평가됨.
 -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30.2억 달러(2005년, 남북교역 13억 4,973만 달러 제외)에 이르고 있으며, 대외무역의존도는 1970년대 25%에서 1990년대 11%까지 하락하였고 2000년대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04년 현재 13%¹³⁾ 수준임.

13) 2005년 이후 대외무역의존도는 GNI 추계치가 없는 상황에 따라 제시되지 못함.

- 중유 지원과 제재 조치 해제에 따른 남북경협 활성화는 중장기적인 북한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2.13 합의에 따라 북한에 지원되는 중유 100만 톤의 경우 일반적으로 80만kw 정도의 전력 지원 효과를 가짐.¹⁴⁾
- 대북제재 해제 및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 3대 경협사업과 신 경협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의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됨.
- 북한은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해 상품수지, 위탁가공료 수입과 경상이전수지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국민소득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결론

- 북핵 상황과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대량살상무기의 해체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지원 조치에 대한 합의라는 기본적인 틀이 유사함.
- 리비아의 경우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배경에 있어서도 미국의 정권위협 및 경제제재 등으로 인한 대외적 압박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협상 관련 핵심주체가 미국이라는 점 또한 북한과 공통적임.
- 우크라이나의 경우 북한의 기본적 입장인 동결 대 보상 조치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로 평가됨.
- 이러한 측면에서 양국의 사례는 신속한 WMD 폐기 및 제재 완화 조치의 선례로 평가될 수 있음.
- 리비아 사례에서 볼 때 북미간 외교 정상화 조치는 북한에 대한 핵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이후에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우크라이나 사례는 협상 당사국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북핵 사례의 경우 경수로 지원 사업의 재개가 북미간 신뢰 구축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들 국가 사례에 비해 단계적인 상응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외교 정상화 등의 단계도 이들에 비해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14) 무연탄의 경우는 100만 톤 지원시 약 50만kw의 전력지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리비아와 달리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내부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어있다는 측면에서, 리비아와 같은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도 중국이라는 배후국가가 존재함에 따라 제재로 인한 압박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핵 보유라는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각 단계별 협상과정에서 경제적 지원 조치 및 정권 보장 등 다양한 상응조치를 이끌어내고자 할 것임.
- 경수로 건설은 북한과 6자회담 기타국간의 신뢰도 구축의 상징으로서 뿐만 아니라 북한 에너지 문제의 해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평가됨.
 - 기존 화력·수력발전의 한계와 북한의 풍부한 우라늄 매장량을 고려할 경우 경수로 건설은 북한 에너지 문제 해소의 궁극적 해결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경수로 건설은 반복적인 합의 파기로 실추된 협상 대상자간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일종의 보장장치로서도 효과적임.
 - 경수로 건설 외에 북한 자체의 대외적 신뢰도 회복을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각 합의 내용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때 가능한 문제임.
 - 북한은 핵 포기와 동시에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대외지원의 규모와 남한과의 협력가능성의 측면에서 양호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원 조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며, 남한과의 협력 가능성 또한 북한에게 긍정적인 조건임.
 - 또한 북한의 경우 개혁·개방에 따른 국제기구의 대외지원을 더욱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임.
 - 경제적 지원 및 경험의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점진적으로나마 중국과 베트남과 같이 개혁·개방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리비아의 경우는 미국, UN의 경제제재 기간인 1994년 이후부터 IMF의 지원하에 내부적으로 민영화 및 무역자유화 등 시장개혁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는 제재 해제 이후의 순조로운 경제 회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